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717 제출연월일: 2024. 10. 16.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1항제5호 중 "등록일부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6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 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 |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 |
| 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등 | 록취소 등) ① |
| 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 |
|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 | |
| 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 | |
| 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 |
|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 |
| 한다.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u>등록일부터</u> 1년 이내에 제16 |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 |
| 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 <u>터</u> |
|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 | |
| 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 |
| 경우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